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49

발의연월일: 2025. 4. 18.

발 의 자:정태호·김주영·서영석

박정현 • 문진석 • 김영환

이학영 • 전혐희 • 한정애

허성무 • 윤준병 • 김태선

김태년 · 서영교 · 박 정

역태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대표적 교통수단인 버스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노선 신설을 기피하고 운행을 감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환승할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적자보전의 책임을 관할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노선 신설을 기피하는 상황임.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

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철도"를 "버스, 철도"로 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2조제2호다목"을 "제2조제2호가목"으로, "제3호다목에"를 "다목, 제3호 가목 및 다목에"로 한다.

4의2. "버스"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철도계정"을 "버스계정, 철도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철도계정"을 "버스계정, 철도계정"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버스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버스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 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 ② 버스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 조·융자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 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 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의 보조
- 5.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6.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철도계정"을 "버스계정, 철도계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u>철도</u> ,	제1조(목적) <u>버스,</u>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철도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버스"란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를 말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8
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	
중교통(「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u>제2</u>	<u>제</u>
조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2조제2호가목다목, 제3호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u>가목 및 다목에</u>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용)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 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 ② 도로계정, <u>철도계정</u>, 교통체 계관리계정 및 공항계정은 국 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 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 용한다.
-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 입 및 세출) ① (생 략)
 -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10. (생략)
 -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
 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
 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 12. (생략)
 - ③ (생 략)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운
<u>\$</u>) ①
<u>버스계정, 철도계정</u>
② <u>버스계정, 철도계</u>
<u>정</u>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
입 및 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1. ~ 10. (현행과 같음)
<u><삭 제></u>

- 1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 <u>제5조의3(버스계정의 세입 및 세</u>출) ① 버스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 터의 전입금
 -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
 - 7.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매각한 대금
 - ② 버스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

 상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u>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u> <u>대한 보조·융자</u>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용자
-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의
 보조
- 5.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 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6.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 한 경비
-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 · ② (생 략)
- ③ 도로계정, <u>철도계정</u>, 교통체계관리계정, 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④ (생 략)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버스계정, 철도계
<u>정</u>
<u>.</u>
④ (현행과 같음)